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법자문사명부]①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①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4조[각종 등록신청서]규정 제6조, 제28조에 의한 각종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5조[이력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이력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사진]①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은 4매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이어야 한다.

제7조[서약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료납부] ①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료납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및 등록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2.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 50만 원
3.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 5만 원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③ 제2항의 등록비용(제5호 제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등록사무처리부]협회가 규정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규정 제11조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등록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명서]규정 제12조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29조에 관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등록통지]협회장이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등록거부통지]협회장이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각종 신고서]규정 제14조 및 제30조에 의한 신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 14 조 [등록취소사유신고서]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 15 조 [등록취소신청서]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 16 조 [명부폐쇄방식]협회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부를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비고란에 다음 표지와 같은 붉은색 고무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등록취소통지서]협회장이 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 18 조 [안건회부서]규정 제23조에 의한 안건회부서의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 19 조 [심사기일통지서]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 20 조 [심사조서]규정 제26조제4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제5항에 의한 심사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 21 조 [의결서]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 22 조 [보고]이 회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 1. 17.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목록”

- | | |
|-------------------------|---------------------------|
| 제 1 호 외국법자문사명부/ | 제 15 호 등록거부통지 / |
| 제 2 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보충용지/ | 제 16 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
| 제 3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 제 17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
| 제 4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보충용지/ | 제 18 호 등록취소사유신고서/ |
| 제 5 호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 제 19 호 등록취소신청서/ |
| 제 6 호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 제 20 호 등록취소통지서/ |
| 제 7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 제 21 호 안건회부서/ |
| 제 8 호 이력서/ | 제 22 호 심사기일통지서/ |
| 제 9 호 서약서/ | 제 23 호 주임심사위원 심사조서/ |
| 제 10 호 등록료납부서/ | 제 24 호 심사조서/ |
| 제 11 호 등록사무처리부 / | 제 25 호 의결서/ |
| 제 12 호 외국법자문사등록증명서/ | 제 26 호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
| 제 13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증명서/ | 제 27 호 외국법자문사자격등록명세서/ |
| 제 14 호 등록통지/ | 제 28 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명세서/ |

등록년월일 2 0 . . .		외국법자문사명부		등록번호 ①
① 성명	원어			신고년월일 . . .
	한글			. . .
	영어			사진
②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번호			
③ 국적	변동년월일 . . .	국가		신고년월일 . . .

④ 출생지

⑤ 국내주소	. . .	주소		. . .

⑥ 사무소명칭	. . .	명칭		. . .

⑦ 사무소소재지	. . .	소재지		. . .

⑧ 자격취득국가	취득년월일	국 가 외국변호사명칭 (원어) (한글) (영어)	등록년월일	
	(원어) (한글) (영어)	
⑨ 자격승인	승인년월일	승인번호	신고년월일	
⑩ 개 업	개업년월일	개업구분	신고년월일	
	
	
	
⑪ 휴 업	휴업년월일	휴업사유	신고년월일	
	
	
⑫ 등록취소	취소년월일	취소사유	등록년월일	
	
	
⑬ 업무정지	결정년월일	정지사유	신고년월일	
	
⑭ 징 계	처분년월일	징계사유	징계별	등록년월일

⑮ 비 고				

등록년월일 2 0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등록번호 ①외		
① 명 칭	한 글				신고년월일	
	영 문					
② 설립인가	인가번호		설립인가일			
③ 설립목적						
④ 본 점 사무소	명 칭			설립일		
⑤ 본 점 소재지	최초소재지				신고년월일	
	최종소재지					
⑥ 사무소 주소	설치년월일	주 소		신고년월일	폐쇄년월일	
⑦ 대 표	인 가	한 글	영 문	신고년월일	폐쇄년월일	

[제3호 서식]

⑧ 구성원	가입인가	한 글	영 문	신고년월일	탈퇴년월일
⑨ 소 속 외국법자문사	채 용	한 글	영 문	신고년월일	사직년월일
⑩ 징 계	결정일	결정사유		별	등재일
⑪ 설립인가 취 소	인가일	취소사유			등재일
⑫ 해 산	인가일	취소사유			등재일
⑬ 비 고					등재일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of Registration to Foreign Legal Consultant

Applicant	① 성 명 Name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②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③ 국 적 Nationality	
	④ 출 생 지 Birthplace			
	⑤ 국내주소 Address (Local)	□□□-□□□ □□□□ □□□□ Postal Code	전화 Phon : e	FAX :
⑥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⑦ 자격취득년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⑧ 외국변호사명칭 Title of Foreign lawyer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⑨ 자격승인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pproval		⑩ 자격승인번호 Approval Number		
⑪ 사무소명칭 Name of Office				
⑫ 사무소소재지 Seat of the Head Office		Postal Code TEL :	FAX :	
⑬ E - m a i l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신청합니다.

I apply the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accordance with Article 10, Section 1,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Regulations and Article 6,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Foreign Legal Consultant, Korean Bar Association Bylaws.

2 0

Name of Applicant

To Korean Bar Association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 이 력 서
- 사 진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서 약 서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The Application Form to Renew the registration

신	①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② 등록년월일 Date of Registration			
청	③ 성명 Name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④ 사무소명칭 Name of Office			
인 Applicant	⑥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⑤ 국적 Nationality	
	⑦ 출생지 Birthplace			
	⑧ 한국주소 Local Address	Postal Code	Tel. :	FAX :
⑨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⑩ 자격취득년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⑪ Date of qualification Approval		⑫ 자격승인번호 Approval Number		
⑬ 외국변호사명칭 Title of Foreign lawyer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⑭ Seat of the Head Office	Postal Code	Tel. :	FAX :	
⑮ E-mail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I apply to renew the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accordance with Article 11, Section 3,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Regulations and Article 6,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Foreign Legal Consultant, Korean Bar Association Bylaws.

2 0

Name of Applicant

To Korean Bar Association

첨 부 서 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input type="checkbox"/> 이 력 서 <input type="checkbox"/> 사 진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input type="checkbox"/> 위법행위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input type="checkbox"/> 서 약 서
----------------------------	-------------------------------------------------------------------------------------------------------------------------------------------------------------------------------------------------------------------------------------------------------------------------------------------------------------

서약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am not subject to and do not otherwise fall within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2.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For the registration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I, having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ies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년 월 일

_____이 름
_____서 명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담당자:

[참고]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rticle 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isqualified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1.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terminated or the exemption from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made definite;
2.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execution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the stay of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for whom two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lapse of the stay period;
3.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sentence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a stay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4.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fired from a public service through an impeachment or thre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dismissed or put to a heavier punishment through a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was put to an action equivalent to a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0 subparagraph 1 through 3 or Article 102 paragraph ②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for whom such an action has not been invalidated yet; and
6. A person who is incompetent, quasi-incompetent, or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is not yet rehabilitated, and a person who is treated likewise in accordance with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original license country

등록료 납부서

1. 금 원

납부사유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 갱신
	<input type="checkbox"/> 원자격국 변경 등록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합니다.

20 . . .

납부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외국법자문사 등록증명서

Registration document
(Foreign Legal Consultant)

성 명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등 록 번 호

Registration Number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외국법자문사명부
에 등록하였음.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

명 칭

등 록 일

등록번호

위 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등록하였음.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대한변호사협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등 록 통 지

등 록 구 분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
신 청 인	
신청서접수년월일	20 . . .

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등록년월일 : 20 . . .
2. 등 록 번 호 : 제 호

첨부서류 : 등록증서 1통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제 호 20
 수신
 제목 등록거부통지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
신청인	
신청서접수년월일	20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거부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신청인은 이 등록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외 국 법 자 문 사 명 부 변 동 신 고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④ 사무소 주소			
		□□□-□□□ 전화 :	FAX :	
	⑤ 국내 주소			
	⑥ 국 적		⑦ 자격등록번호	
⑧ 변 동 사 항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사무소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소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국가 <input type="checkbox"/> 외국번호사명칭			
⑨ 변 동 내 용	※ 종전 기재내용, 변동년월일, 변동사유 및 근거등을 상세히 기입할 것.			
E - m a i l				
<p>위 신고인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p>				
첨 부 서 류	<input type="checkbox"/>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 주소변경 시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사유신고서

당 사 자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⑦ 등 록 취 소 사 유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해당 <input type="checkbox"/> 자격승인 취소	
⑧ 취 소 사 유 내 역		
⑨ 사 유 발 생 년 월 일	20 . . .	

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
법자문사등록규정 제16조 제1항에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
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신청서

당 사 자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록 번호	
⑨ 등 록 취 소 신 청 사 유	폐 업 (상세사유 :)	
⑩ 폐 업 예 정 일	20 . . .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 등록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대한변호사협회

변 협 제 호 20
 수 신
 제 목 등록취소통지

당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④ 주 소			
	⑤ 사 무 소			
자	⑥ 등 록 번 호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당사자는 이 등록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취소의 구분 :
2. 등록취소 년월일 :
3. 등록취소의 사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안 건 회 부 서

당 사 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안건	
등 록 거 부 사 유	
관련 법규	
첨부 서류	

위 당사자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등록거부 /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 안건을 회부합니다.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심사위원회 귀중

심 사 기 일 통 지 서

당 사 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번 호			
심 사 일 시		20		
심 사 장 소				
(등록거부, 등록취소) 사유의 요지				
고 지 사 항		당사자는 (1)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2)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3) 대리인의 선임이나, (4) 심사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안전회부서 1부		

귀하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등록거부 } 안전의 심사기일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 }

20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귀하

주임심사위원심사조서

안건번호 :

당 사 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참 여 인				
대 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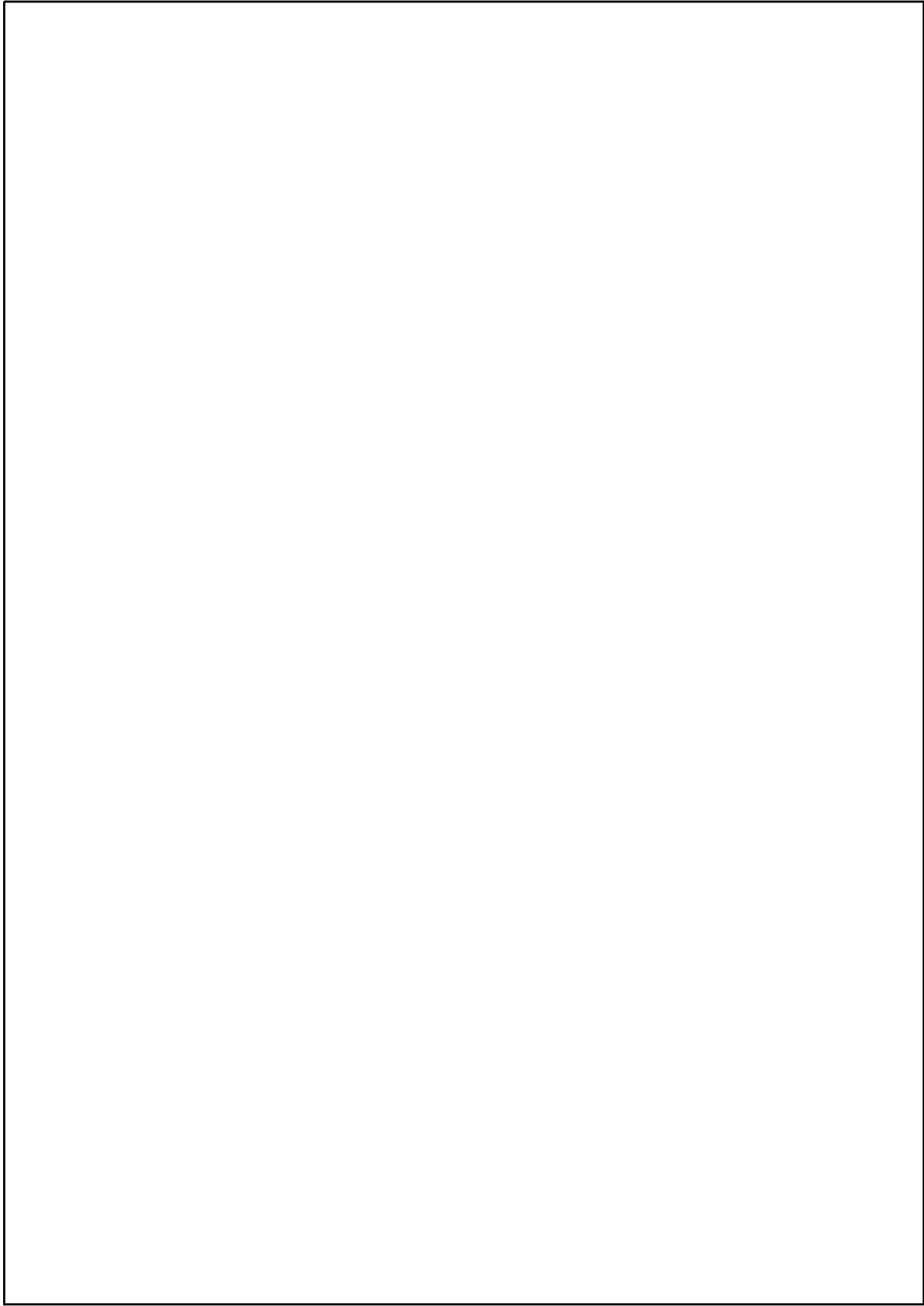
심사의 경과 및 내용

20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주임심사위원 (인)

간 사 (인)



심 사 조 서

안건번호 :

당 사 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출 석 위 원	
당사자 출석여부	
대리인 출석여부	
참 여 인	
공 개 여 부	

심 사 의 경 과 및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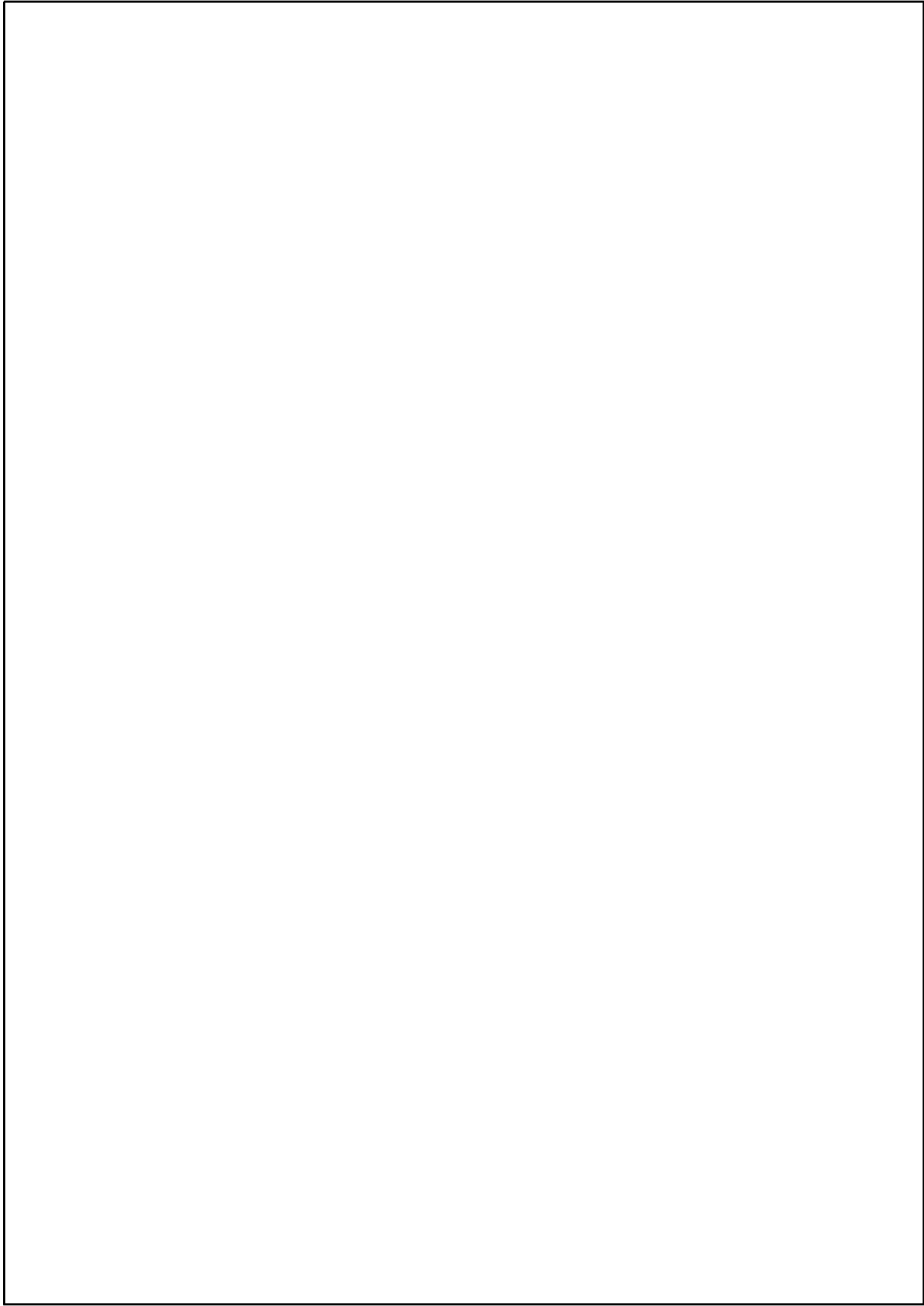
--

20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간 사 (인)

[제24호 서식별지]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의 결 서

안전번호 :

당 사 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무 소			
	등 록 번 호			
	대 리 인			

주 문	
-----	--

이 유	
-----	--

20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대한변호사협회

변 협 제 호
수 신 법무부장관 20
참 조 법무실장
제 목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별첨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외국법자문사등록명세서

등록 년 월 일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 번호	자격승인년월일	자격취득사유

